

흥덕왕 복식제도 원전 고찰 및 분석

전 현 실 ·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강사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 전공 교수⁺

A Study and Analysis on King Heungdeok's Prohibition of Clothing

Hyun-Sil Jeon · Soon-Che Kang⁺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투고일: 2013. 4. 11, 심사(수정)일: 2013. 6. 24, 게재 확정일: 2013. 7. 1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isnomers about King *Heungdeok's* "Prohibition of Clothing" by comparing the writings of *Jeongdukbon* [正德本] and *Juzabon* [鑄字本], which were different versions of the original texts of 『*Samguksagi* [三國史記]』, with 11 related books written between 1948 and 2012. In addition, this study is reconsidered the terms about several clothes as well as the values of fabrics. The study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conclusions. 1. We suggested the correction about a misnomer in the 11 books and the misnomers for fabric items appeared most frequently. The records of *Jeongdukbon* about some of the items were different from ones of *Juzabon*, especially regarding noble woman's sash were written according to the record of *Juzabon* in most of the related books. However, when the commonplace woman's sash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we could suppose that the record of *Jeongdukbon* was more reliable. 2. We examined the terms for *Yodae* [腰帶] and *Yoban* [褙攀]. It can be inferred from the original texts that the *Yodae* were different in material and function compared to the *Dae* [帶]. In other words, the wearing position of male's metal *Yodae* was the waist, whereas the females wore their *Dae* made of fabrics on their chest. An example of this can be seen from the female clay images of Tomb *Yonggang-dong* [龍江洞]. Moreover, female's *Yo* [褙] and *Ban* [攀] were distinct items on the basis of documents. For this reason, we suggested that *Yodae* and *Yoban* should be separated and written in books. 3. We suggested that *Ju* [紬, silk tabby] might be valuable according to a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value of recorded fabrics. Besides, *Po* [布, hempcloth] presumably were used as higher quality fabric than *Myeonju* [綿紬, silk tabby] on some items because *Po* was graded on the density by each class.

Key words: costume(복식), fabrics(직물), Jeongdukbon(정덕본), Juzabon(주자본),
King Heungdeok's Prohibition of Clothing(흥덕왕 복식제도), Samguksagi(삼국사기)

I. 서론

『三國史記』卷第33 雜誌 第2 色服 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식은 28代 진덕왕 3년(649) 唐服 차용을 시작으로 고유 복식과 당 복식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의 복식제도 하에 있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는 당 복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홍덕왕 9년(834)의 복식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홍덕왕 복식제도는 오늘날까지 통일신라의 복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료로써, 계급의 단계를 5계급 남녀 10등급으로 나누어 20여종 복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착용 가능의 유무를 밝힘과 동시에 복식의 재료를 차등 있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86년 발굴 보고된 황성동·용강동 고분 출토 토용들은 홍덕왕 복식제도 내용의 한 부분을 담보해주는 좋은 물적 자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김부식 개인이 아니라 최산보 이하 10명의 보좌관의 도움으로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편찬된 것이다. 당시 『삼국사기』는 『舊三國史』로 지칭된 사료를 위시로 많은 『古記』류나 금석문물, 그리고 중국의 사서 및 경서, 문집들을 활용하여 보충, 윤문, 수정을 가하면서 '재편'한 것이다.¹⁾ 다만 오늘날 『구삼국사』, 『고기』와 같은 전거 자료²⁾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국사기』의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저술되었을 지에 대한 의문제기와 이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誤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현존 最古 문헌으로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오늘날 전해오고 있는 『삼국사기』版本은 조선 中宗 7년(1512)에 간행된 正德本(혹은 壬申本)³⁾과 현종대와 영조대에 두 차례 간행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⁴⁾ 鑄字本⁵⁾이 있다. 다만 두 판본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서로 다른데, 즉 5두 품녀 품목 중 정덕본의 “襟襠”이 주자본에서는

“襟襠”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4두품 靴에 대해 정덕본에서는 “禁烏麤皺文紫皮”로, 주자본에서는 “禁烏麤皺文紫皮”로 기록되었고, 4두품녀 帶에 대해 정덕본에서는 “只用錦紬已下”로, 주자본에서는 “只用綿紬已下”로 기록되고 있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삼국사기』 홍덕왕 복식제도의 내용은 李如星이 1948년 『朝鮮服飾考』⁶⁾에 처음으로 표로 정리·수록한 이래, 이후 간행된 대부분의 한국복식문화 관련 저서에서에서도 통일신라 복식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관련 저서에서 제시된 홍덕왕 복식제도를 정리한 표 혹은 이에 관한 서술 내용을 『삼국사기』의 정덕본, 주자본에 수록된 원전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잘못 정리·수록됨으로써 왜곡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저서에 제시되고 있는 일부 의복 품목의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홍덕왕복식제도 관련 선행연구⁷⁾에서는 저서에 제시된 홍덕왕복식제도 표와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원전과의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한 예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정확한 원전 인용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덕본과 주자본에 기록된 원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1948년부터 2012년까지 간행된 관련 저서에 나타난 인용 및 해석상의 몇 가지 誤記에 대해 수정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일부 의복 재료의 가치에 대한 재고와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저서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원전과의 비교 검토

이여성의 『조선복식고』를 필두로 하여 현재까지 발간된 한국복식문화사 관련 저서 총 11권⁸⁾에 수록된 홍덕왕 복식제도에 관한 표 혹은 이에 관한 서술 내용을 『삼국사기』 원문과 대조·검토하였다.

1. 진골의 履에 대한 오기

원전에는 “任用皮絲麻”로 기록되었으나 대부분의 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用皮絲”로 정리되어 ‘麻’의 사용에 대한 것이 누락되었다.

2. 진골녀의 表衣, 裱, 釵에 대한 오기

<표 2>와 같이 표의의 원전 기록은 “禁闕繡錦羅”인데 일부 저서에는 “禁闕繡羅”라 하였다. 또 “同上”이라 기재한 저서 B의 경우 ‘上’은 “冠 禁瑟瑟鈿”이므로 이는 “同左”의 단순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裱는 원전에 “禁闕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로 기록되었으나 대부분의 저서에서 “禁闕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로 정리하여 ‘~者’,

즉 ‘~인 것(으로 만든 것)’의 내용이 누락되고 있다. 또 釵에 관한 “禁刻鏤及綴珠”라는 원전 기록이 저서 K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진골녀의 채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 왜곡이 우려된다.

3. 6두품의 ‘冠帽(幞頭), 表衣, 內衣, 腰帶, 襪, 靴, 履’에 대한 오기

복두는 원전에 “幞頭用總羅縹絹布”로 기록했으나 <표 3>과 같이 대부분의 저서에서 “幞頭用總羅絹布”로 정리하였고, 표의의 원전 기록은 “只用綿紬紬布”이나 저서 B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저서에서 “用綿紬紬布”로 정리함으로써 6두품 표의 소재로서 紬 사용이 누락되고 있다. 또한 內衣는 원전 기록의 “小文綾縹絹布”가 “小文綾縹絹”으로,

<표 1> 진골의 履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진골	履	任用皮絲麻	A, B, C, G, H, I, K 用皮絲

<표 2> 진골녀의 表衣, 裱, 釵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진골녀	表衣	禁闕繡錦羅	B 同上 ※ 저서 B의 上은 ‘冠 禁瑟瑟鈿’이다 I, J 禁闕繡羅
	裱	禁闕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A, B, C, F, G, H, I, J 禁闕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 K 繡羅(계수)는 금하고, 金銀絲孔雀尾翡翠毛(금은사공작미비취모)는 사용 ※ 밑줄 친 부분처럼 한자음의 오기도 나타남
	釵	禁刻鏤及綴珠	K 제시하지 않음

<표 3> 6두품의 冠帽(幞頭), 表衣, 內衣, 腰帶, 襪, 靴, 履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6두품	冠帽(幞頭)	幞頭用總羅縹絹布	A, B, C, G, H, K 幞頭用總羅絹布 I, J 幞頭用布總羅絹
	表衣	只用綿紬紬布	B, C, G, H, I, J, K 用綿紬紬布
	內衣	只用小文綾縹絹布	A, B, C, G, H, K 用小紋綾縹絹 I, J 用少紋綾縹絹
	襪	只用純綿紬布	G 용 시견주포
	靴	禁烏縹皺文紫皮	A, B, C, G, H, I, J 禁烏縹皺文紫皮 K 烏縹皺文紫皮 사용
	履	只用皮麻	A, B, C, G, H, I, K 用皮

襪은 원전에 “只用純綿紬布”로 기록되었으나 “용시견주포”로 정리한 예도 있다. 또 靴에 대해 정덕본, 주자본 모두 “禁烏麤皺文紫皮”로 기록되었으나 여러 저서에서 “禁烏麤皺文紫皮”라 하여 麤를 麤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금 오미추문자피’를 ‘오미추문자피 사용’으로 잘못 정리한 예도 보인다. 리는 원전에 “只用皮麻”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저서에서 “用皮”로 정리하여 ‘麻’가 누락되어 있다.

4. 6두품녀의 ‘表衣, 袴, 短衣, 表裳, 半臂, 帶, 褙褶, 袿, 褙襪, 襪, 襪袴, 履, 梳, 釵’에 대한 오기

표의는 원전에서 “只用中小文綾緞絹”이라 하였으나 <표 4>와 같이 대부분의 저서에서 “用小文綾緞絹”으로 정리하여綾 무늬를 中·小의 크기로 차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 袴의 원전 기록은 “禁闕繡錦羅總羅金泥”인데 “禁總繡

<표 4> 6두품녀의 表衣, 袴, 短衣, 表裳, 半臂, 帶, 褙褶, 袿, 褙襪, 襪, 襪袴, 履, 梳, 釵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6두품녀	表衣	只用中小文綾緞絹	A, B, C, K	用 小紋綾緞絹
			D, E, H	用 小文綾緞絹
			G	용 소문능시견
			I, J	用 少紋綾緞絹
	袴	禁闕繡錦羅總羅金泥	B	禁 總繡錦羅闕羅金泥
			C, G, H	禁 總羅錦羅闕羅金泥
			D	禁 闕繡錦羅 純羅 金泥
			E	禁 闕繡錦羅 總羅 金泥 野草羅
			F	금은니 修飾 禁
			K	總羅錦羅繡羅金泥(세라금라계라금니) 금함 ※ 밑줄 친 부분처럼 한자음의 오기도 나타남
	短衣	禁闕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B, C, G, I, J	同 褙褶 (禁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F	계, 수, 금라, 표방라, 금은니 수식 禁
			H, K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금함
	表裳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金銀泥纈纈	I	禁 闕繡錦羅總羅野草羅金銀泥纈
	半臂	禁闕繡羅總羅	J	禁 闕繡錦羅總羅野草金銀泥纈
	褙褶	禁闕繡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C, G, H	禁 闕繡總羅
			B, C, G, I, J	禁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
			F	계, 수, 금라, 표방라, 금은니 수식 禁
			H	短衣와 같음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금함)
	袿	禁闕繡錦羅金銀泥	D, E	禁 闕繡羅金銀泥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F	금은사, 비취모 수식 禁
褙襪	禁闕繡	A, B, C, G, H, I, J, K	제시하지 않음	
襪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	H	闕繡銀羅總羅野草羅 금함	
		I, J	禁 羅繡錦羅總羅野草羅	
襪袴	禁闕羅總羅	A, B, C, G, H, I, J	禁 闕羅錦羅	
		D	禁 闕繡錦羅 總羅	
履	禁闕繡錦羅總羅	A, B, C, G, H, I, K	禁 闕羅繡羅總羅	
梳	禁瑟瑟鈿	B	禁 瑟瑟鈿玳瑁	
		C, G, H, K	同 眞骨女(禁 瑟瑟鈿玳瑁)	
釵	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F	수, 금, 은, 각루, 철주 禁	

錦羅罽羅金泥” 혹은 “禁 罽羅錦羅 純羅 金泥”, “禁 罽羅錦羅 總羅 金泥 野草羅”, “금은니 修飾 禁”, “總羅錦羅罽羅繡羅金泥 금함”으로 5가지의 오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6두품녀의 短衣와 褙襦의 원전기록은 “禁罽羅繡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로 동일한데, 저서 B부터 단의가 “同 褙襦”으로 정리되고 동시에 배당은 “禁 罽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로 오기됨으로써 단의와 배당의 동일한 오기가 일부 저서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저서 F의 “계, 수, 금라, 표방라, 금은니 수식 禁”이라는 내용에서 ‘표방라’는 ‘포방라’의 단순한 오기일 것이다. 表裳은 원전에서 “禁罽羅繡羅總羅野草羅金銀泥纈纈”로 기록되고 있으나 ‘纈纈’의 纈자, 혹은 ‘野草羅’의 羅자 등의 누락이 나타나고 있다. 半臂는 원전 기록이 “禁罽羅繡羅總羅”인데, 여기서도 “罽羅總羅”로 오기가 나타나고 있고, 裱의 원전 기록은 “禁罽羅繡羅金銀泥”인데, “禁罽羅繡羅金銀泥”로 정리한 예도 있다. 帶는 원전은 “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인데, “금은사, 비취모 수식 禁”라고 되어 있어 원전 내용이 왜곡되고 있다. 또 褙襦은 원전에 “禁罽羅”라 기록되어 있으나 제시되어 있지 않은 예가 있고, 襪은 원전에 “禁罽羅繡羅總羅野草羅”로 기록되었으나 “罽羅銀羅總羅野草羅 금함” 혹은 “禁 羅繡羅總羅野草羅”라 하여 ‘錦’이 ‘銀’으로, 혹은 ‘罽’가 ‘羅’로 오

기된 예가 있다. 襪의 원전은 “禁罽羅總羅”이나 “禁 罽羅繡羅”로 기재된 예가 많고 “禁 罽羅繡羅總羅”로 기재한 예도 있다. 리의 원전기록 “禁罽羅繡羅總羅”은 많은 저서에서 “禁 罽羅繡羅總羅”로 오기되어 있다. 梳는 원전에서 “禁瑟瑟鈿”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禁 瑟瑟鈿玳瑁”로 기재한 예가 있고, 釵의 원전기록 “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가 저서 F에서는 “수, 금, 은, 각루, 철주 禁”이라 하였는데, 이 중 ‘수, 금’은 원전 ‘순금’의 오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5. 5두품의 ‘袴, 內衣, 半臂, 腰帶, 靴, 履’에 대한 오기

고는 원전 내용 “只用綿紬布”를 “綿紬布 금함”으로 오기한 예가 있고, 내의는 원전에서 “只用小文綾紬絹布”인데, <표 5>와 많은 저서에 “用 小文綾紬絹”으로 기재하여 오기가 발생하고 있다. 반비는 원전, 저서 모두 “同內衣”로 기록, 정리되어 있는데, 이미 저서에서 내의에 대한 오기가 발생하고 있어 반비도 동일한 오기가 반복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대의 원전 기록 “只用鐵”은 “用 鐵銀”으로, 화에 대해서는 정덕본, 주자본 모두 “禁烏麋皺文紫皮”로 기록되었는데, 일부 저서에 “禁 烏麋皺文紫皮”로 麋과 麋를 바꾸어 기록한

<표 5> 5두품의 袴, 內衣, 半臂, 腰帶, 靴, 履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원전	저서 오기내용
5두품	袴	只用綿紬布	K	綿紬布 금함
	內衣	只用小文綾紬絹布	A, B	用 小文綾紬絹
			C, H, I, K	用 小紋綾紬絹
			G	용 소문릉시견
			J	用 少紋綾紬絹
	半臂	同內衣 (只用小文綾紬絹布)	A, B	同 內衣(用 小文綾紬絹)
			C, H, I, K	同 內衣(用 小紋綾紬絹)
			G	동 내의(용 소문릉시견)
			J	同 內衣(用 少紋綾紬絹)
	腰帶	只用鐵	A, B, C, G, H, I, J, K	用 鐵銀
靴	禁烏麋皺文紫皮	D, E	禁 烏麋皺文紫皮	
		K	六頭品과 같음(烏麋皺文紫皮 사용)	
履	用皮麻	A, B, C, G, H, I, K	用 皮	

예가 있으며, ‘금 오경추문자피’를 ‘오미추문자피 사용’으로 잘못 정리한 예도 보인다. 또한 리는 원전에 “用皮麻”로 기록되었으나, “用皮”라 하여 ‘麻’가 누락된 예가 많다.

6. 5두품녀의 ‘袴, 短衣, 內裳, 表裳, 褙褶, 裱, 帶, 襪, 襪袴’에 대한 오기

〈표 6〉에서와 같이 고는 원전에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金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저서에서는 “禁闕繡羅總羅野草羅金泥”라 하여 錦이 누락된 경우가 있고, 저서 E에는 5두품녀의 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 短衣(同 褙褶)는 원전에 “禁闕繡錦羅布紡羅總羅金銀泥纈纈”로 기록되었는데, 저서에 따라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 금함” 혹은 “同 褙褶”이라 하여 공통적으로 總羅가 빠졌

다. 다시 “동 배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서별로 “禁闕羅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禁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전에 기록된 繡의 繡가 羅로 오기되거나 부분적으로 탈 오자가 확인된다. 內裳은 원전에 “禁闕繡錦野草羅金銀泥纈纈”로 기록되었으나, 저서에 따라 “禁闕羅錦野草羅金銀泥纈纈” 혹은 “禁闕金野草羅金銀泥纈纈”로 오기가 나타났는데, 후자의 ‘繡金’의 金은 錦의 오타일 것이다. 表裳의 원전 내용은 “禁闕繡錦野草羅總羅金銀泥纈纈”로, 일부 저서에서는 “同 六頭品女”로 정리되고 있는데, 저서별로 정리된 6두품녀의 표상 내용을 살펴보면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金銀泥纈纈”로 오기이고, 일부 저서는 “禁闕繡錦野草羅總羅金錦泥纈纈”로 오기가 나타나고 있다.

〈표 6〉 5두품녀의 袴, 短衣, 內裳, 表裳, 褙褶, 裱, 帶, 襪, 襪袴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5두품녀	袴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金泥	B, C, G, H	禁闕繡羅總羅野草羅金泥
			K	闕繡羅總羅野草羅金泥 금함
	短衣	禁闕繡錦野草羅布紡羅總羅金銀泥纈纈	B	同 褙褶 (禁闕羅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C, D, I, J, K	同 褙褶 (禁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
			H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 금함
	內裳	禁闕繡錦野草羅金銀泥纈纈	A	禁闕羅錦野草羅金銀泥纈纈
			B	禁闕金野草羅金銀泥纈纈
	表裳	禁闕繡錦野草羅總羅金銀泥纈纈	C, G, H, K	同 六頭品女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金銀泥纈纈)
			D	禁闕繡羅野草羅總羅金銀泥纈纈
			I, J	禁闕繡錦野草羅總羅金錦泥纈纈
	褙褶	禁闕繡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A, B, I	禁闕羅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C, G	禁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
			F	계, 수, 금, 야초라, 금니, 협힐 禁
			H	短衣와 같음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 금함)
	裱	用綾絹已下	A, B, C, G, H, I, J	用綾
			K	제시하지 않음
帶	禁以金銀絲孔雀尾翹翠毛爲組	F	금은사, 공작미, 비취모 禁	
襪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	H	六頭品女와 같음 (闕繡銀羅總羅野草羅 금함)	
		I, J	同 六頭品女 (禁羅繡錦羅總羅野草羅)	
襪袴	禁闕繡錦羅總羅	B, C, G, H, I, J, K	禁闕羅錦羅總羅	

배당은 원전에 “禁闕繡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로 기록되었는데, 저서에 따라 “禁 闕羅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계, 수, 금, 야초라, 금니, 협힐 禁”, “禁 闕羅錦羅布紡羅野草羅金銀泥纈纈”의 내용으로 오기가 보이거나 이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저서도 있었다. 표는 원전에 “用綾絹已下”이나 “用 綾”로 오기한 예가 많고 전혀 제시하지 않은 예도 있다. 띠에 대한 오기는 6두품녀의 것과 동일하다. 襪은 원전에 “禁闕繡錦羅總羅野草羅”로 기록되었는데, 오기가 나타난 일부 저서에서는 모두 “同 六頭品女”로 정리하고 있으나 저서에 따라 “闕繡銀羅總羅野草羅 금함” 혹은 “禁 羅繡錦羅總羅野草羅”의 내용으로 두 종류의 오기가 나타나고 있다. 말오는 원전에 “禁闕繡錦羅總羅”로 기록되고 있으나 “禁 闕羅錦羅總羅”로 정리한 예가 많다.

한편 5두품녀 품목 중 배당은 정덕본에서 “襟襠”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襟’은 ‘褶’의 譌字⁹⁾이다. 그러나 정덕본에서 6두품녀, 4두품녀는 5두품녀와 달리 “襟襠”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전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襟襠’은 ‘襟襠’의 오타일 것으로 생각된다.

7. 4두품의 ‘幞頭, 表衣, 表裳, 內衣, 半臂, 腰帶, 靴’에 대한 오기

<표 7>에서와 같이 4두품 복두는 원전 기록이 “只用紗純絹布”인데 일부 저서에 “用 純絹布”라

하였고, 표의에 대한 원전기록 “只用布”는 대부분의 저서에서 “用 綿紬”로 전혀 달리 기록하고 있다. ‘4두품 표상’에 대한 것은 원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이어성의 『조선복식고』를 비롯하여 이후 간행된 거의 모든 저서에서 “用 純絹”이라 기록함으로써 이는 4두품 남자가 상을 착용한 것으로 인지될 여지가 있다.¹⁰⁾ 내의의 원전기록은 “只用純絹綿紬布”로, 많은 저서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거나 “只用 純絹綿絹布”로 오기하고 있다. 半臂 원전은 “只用純絹綿紬布”인데 “用 純絹紬”, “用 純綿紬”로 오기한 예가 있다. 요대의 원전기록 “只用鐵銅”은 “同 鐵銅”이라 하였는데, ‘同’은 ‘用’의 오타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화는 정덕본에는 “禁 烏麁皺文紫皮”로, 주자본에는 “禁 烏麁皺文紫皮”로 기록하고 있는데, ‘麁’는 큰사슴미, ‘麁’은 큰사슴 경으로 같은 의미이다. 대부분의 저서에서는 정덕본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禁’을 ‘사용’이라 기록한 예도 있다.

8. 4두품녀의 ‘袴, 表裳, 半臂, 帶, 襪, 梳, 釵’에 대한 오기 및 ‘帶’에 대한 재고

<표 8>에서와 같이 4두품녀의 고는 원전에 “只用小文綾純絹已下”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저서에 “只用 小父綾純絹已下”로 기재한 예가 있고, 표상의 원전은 “只用純絹已下”인데, 많은 저서에서 “同 袴”라 기재하고 동일 저서에서 ‘고’를 “用 小

<표 7> 4두품의 冠帽(幞頭), 表衣, 表裳, 內衣, 半臂, 腰帶, 靴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4두품	冠帽(幞頭)	幞頭只用紗純絹布	A, B, C, G, I, J	幞頭 用 純絹布
	表衣	只用布	A, B, C, G, H, I, J, K	用 綿紬
	表裳	기록없음	A, B C, G, H, I, J, K	同 純絹 用 純絹
	內衣	只用純絹綿紬布	A, B, C, G, H, I, J, K D	제시하지 않음 只用 純絹綿絹布
	半臂	只用純絹綿紬布	A, B, C, G, H, I, J, K	用 純絹紬
	腰帶	只用鐵銅	A, B	同 鐵銅
	靴	禁烏麁皺文紫皮	D, E K	禁 烏麁皺文紫皮 烏麁皺文紫皮 사용

文綾緇絹”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에서도 원전 기록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의 원전은 “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인데, 저서에는 “繡組野草羅乘天羅總羅 금함”이라 하여 ‘율라11)’를 ‘세라’로 기재한 예도 있다. 말은 원전에 “只用小文綾緇綿紬布”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저서에 “用小紋綾緇綿紬布”로 오기가 나타나고 있고, 梳의 원전은 “用素牙角木”인데, “用素牙角” 혹은 “用牙角”으로 정리하고 있다. 釵의 원전기록은 “禁刻鏤綴珠及純金”인데 “금 각루철주금순금”이라 하여 ‘금’이 ‘금’으로 오기된 예도 있다.

한편 대에 대해 정덕본에는 “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只用錦紬已下”로, 주자본에는 “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只用綿紬已下”라고 수록되어 사용 가능한 소재에 대한 견해차가 나타난다. 즉 정덕본에는 ‘錦紬’, 주자본에는 ‘綿紬’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저서 중 김동욱의 저서¹²⁾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저

서에서 대는 “綿紬”로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요한다.

정덕본, 주자본의 기록에는 4두품녀 대와 달리 평인 여성의 대에 대해 “只用綾絹已下¹³⁾”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만약 주자본과 여타의 저서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4두품 여성의 대의 소재를 ‘綿紬’라고 한다면, 이는 평인 여성에게 허락하고 있는 ‘능, 견’보다 하등의 소재인 면주를 보다 높은 품계의 4두품 여성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4두품 여성의 대의 소재는 정덕본에 수록된 바에 따라, ‘綿’이 아닌 ‘錦’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¹⁴⁾

9. 평인의 ‘袴, 腰帶, 靴’에 대한 오기

<표 9>에서와 같이 평인의 고에 대한 원전은 “同表衣”인데 “用表衣”로 기재된 예가 있다. 또 요대의 원전 기록 “只用銅鐵”이 “同銅鐵”로 정리되고 있고, 화에 대해 정덕본, 주자본 모두 “禁烏

<표 8> 4두품녀-품목 소재의 원전과 저서 내용 비교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4두품녀	袴	只用小文綾緇絹已下	D	只用小文綾緇絹已下
	表裳	只用綿紬已下	A, B	同袴(用小文綾緇絹)
			C, H, I, K	同袴(用小紋綾緇絹)
			G	동고(용 소문릉시견)
			J	同袴(用少紋綾緇絹)
	半臂	同袴	B	用袴
	帶	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只用錦紬已下	F	繡組, 야초라, 승천라, 율라禁, 면, 주 이하만 허용
			H, K	繡組野草羅乘天羅總羅 금하고綿紬 사용
	襪	只用小文綾緇綿紬布	G	용 소문릉시견주포
			H, I	小紋綾緇綿紬布 사용
			J	用少紋綾緇綿紬布
	梳	用素牙角木	A, I, J	用素牙角
B, C, G, H, K			用牙角	
釵	禁刻鏤綴珠及純金	G	금 각루철주금순금	

<표 9> 평인의 袴, 腰帶, 靴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평인	袴	同表衣	C	用表衣
	腰帶	只用銅鐵	A, B	同銅鐵
			D, E	禁烏麁皺文紫皮
	靴	禁烏麁皺文紫皮	K	六頭品과 같음(烏麁皺文紫皮 사용)

〈표 10〉 평인녀의 內衣

신분	품목	원전 내용	저서 오기내용	
			F	시, 건, 주, 포 用
평인녀	內衣	只用純絹綿紬布	K	紗絹綿紬布 사용

〈표 11〉 저서 H의 '제한없음'에 대한 내용

복식 계급	관모	표의	단의	고	내상	표상	내의	반비	배당	표	요대	요반	말	말요	화	화대	이	소	체
진골대등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진골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6두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6두품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5두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5두품녀														제한없음	제한없음				
4두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4두품녀														제한없음	제한없음				
평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평인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廣皺文紫皮”로 기록되었는데, 일부 저서에서 “禁烏麁皺文紫皮”로 기재된 예가 있고, ‘禁’을 ‘사용’이라 정리한 예도 있다.

10. 평인녀의 ‘內衣’에 대한 오기

〈표 10〉에서와 같이 원전에는 “只用純絹綿紬布”로 기록하는데, 저서에서 “시, 건, 주, 포 用”이라 하여 원전의 ‘綿’자가 누락되거나 원전의 ‘純’가 ‘紗’로 오기된 예가 있어 사용 소재 종류에 대한 왜곡이 우려된다.

이밖에 원전에 기록이 없는 것을 모두 〈표 11〉과 같이 ‘제한없음’으로 기재하여 이해에 혼선을 주고 있는 예도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여성 전용

의 것으로 알려진 ‘표’에 대해, 남성에게도 ‘제한없음’으로 정리하고 있음은 표가 남성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여성 전용의 것으로 5두품 여성 이상만 착용할 수 있는 ‘내상’에 대해 남성과 4두품 이하 여성에도 ‘제한없음’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또한 모든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

III. 복식제도의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원문과의 검토를 통해 수록 상의 오류와 해석상의 차이를 논의하고,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저서에 제시되고 있는 일부 의복 품목의 표기 방식과 의복 재료의 가치에 대해 재고

해 보고자 한다.

1. 『삼국사기』원문 기록과 다르게 정리되고 있는 품계별 의복이나 그 소재 부분에 대한 논의

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과 각 저서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 각 계급별로 오기가 나타나는 품

목은 <표 12>와 같다.

이를 통해, 총 57건의 오기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다시 간행된 저서별로 상세히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전반적으로 초기에 발행된 이여성의 『조선복식고』(저서 A)나 석주선의 『한국복식사』(저서 B)부터 시작된 오기는 이후에 간행된 한국복식문화 관련 저서의 대부분에서 저서 A, B의 오기를 반복하고 있거나 또 다른 오기

<표 12> 저서에 나타난 계급별 품목에 대한 오기

품계	오기 품목 및 소재
진골	履
진골녀	表衣, 裋
6두품	冠帽(幘頭), 表衣, 內衣, 襪, 靴, 履
6두품녀	表衣, 袴, 短衣, 表裳, 半臂, 帶, 褙襴, 裋, 帶, 褙襴, 襪, 襪袴, 履, 梳, 釵
5두품	內衣, 半臂, 腰帶, 靴, 履
5두품녀	袴, 短衣, 內衣, 表裳, 褙襴, 裋, 帶, 襪, 襪袴
4두품	幘頭, 表衣, 表裳, 內衣, 半臂, 腰帶, 靴
4두품녀	表衣, 袴, 表裳, 半臂, 帶, 襪, 梳, 釵
평인	袴, 腰帶, 靴
평인녀	內衣

<표 13> 저서 A~K에 나타난 계급, 품목별 오기

복식 계급	관모	표의	단의	고	내상	표상	내의	반비	배당	표	요대		요반	말	말요	화	화대	이	소	채		
											대	대										
진골 대등																			A, B, C, G, H, I, K			
진골녀		B, I, J								A, B, C, F, G, H, I, J, K											K	
6두품	A, B, C, G, H, K, I, J	B, C, G, H, I, J, K					A, B, C, G, H, I, J, K							G		A, B, C, G, H, I, J, K			A, B, C, G, H, I, K			
6두품녀	A, B, C, D, E, H, G, I, J, K	B, C, F, G, H, I, J, K	B, C, D, E, F, G, H, K				I, J	C, G, H	B, C, F, G, H, I, J	D, E	F	A, B, C, G, H, I, J, K	H, I, J	A, B, C, D, G, H, I, J					A, B, C, G, H, I, K	B, C, G, H, K	F	
5두품				K			A, B, C, G, H, I, J, K	A, B, C, G, H, I, J, K				A, B, C, G, H, I, J, K					D, E, K		A, B, C, G, H, I, K			
5두품녀			B, C, D, H, I, J, K	B, C, G, H, K	A, B	C, D, G, H, I, J, K			A, B, C, F, G, H, I, K	A, B, C, G, H, I, J, K	F		H, I, J	B, C, G, H, I, J, K								
4두품	A, B, C, G, I, J	A, B, C, G, H, I, J, K				A, B, C, G, H, I, J, K	A, B, C, D, G, H, I, J, K	A, B, C, G, H, I, J, K				A, B										D, E, K
4두품녀				D		A, B, C, G, H, I, J, K		B				A, B, C, F, G, H, I, J, K		G, H, I, J						A, B, C, G, H, I, J, K	G	
평인				C								A, B										D, E, K
평인녀							F, K															

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품계별 의복이나 그 소재가 『삼국사기』 원문 기록과 다르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에 근거하여 수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전에 없는 4두품 남자의 표상(表裳)에 관한 내용은 저서 A부터 시작되어 이후 반복되고 있어 남자의 치마 착용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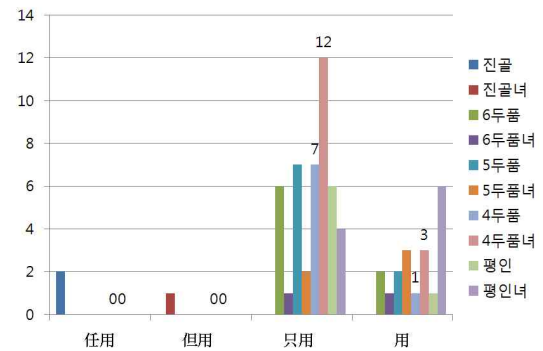
2. 계급별 의복과 그 소재에 대한 사용 가능한 표현에 관한 논의

홍덕왕 복식제도에서는 계급별 의복과 그 소재의 종류별 사용가부를 ‘禁’ ‘用’으로 大別한 후 ‘용’은 다시 ‘任用 / 但用 / 只用 / 用’으로 세분시키고 있다.

‘任用’은 해당 품목의 재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명시된 재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직물이나 그보다 상급에 속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¹⁵⁾이고, ‘但用’과 ‘只用’은 ‘~만 사용’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但用’과 ‘只用’을 비교해보면, ‘단용’은 ‘오직, 그것만, 특히 그것만 일부러¹⁶⁾ 사용’의 뜻이, ‘지용’은 ‘~만 사용하나 ~을 하면 좋다¹⁷⁾’라는 뜻이 있으므로, ‘지용’보다는 ‘단용’이 보다 엄격하게 사용 범위를 규제한 용어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관련 저서에서 ‘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用’ 혹은 ‘사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용어들은 실제 사용에 있어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있고,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인 只用은 ‘~만 사용’이라 하여 用과는 달리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또한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任用 / 但用 / 只用 / 用’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원전을 기준으로 보면, 任用, 但用, 只用, 用으로 기록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그런데, 원전에 의거하여 각 품계별로 임용, 단용, 지용, 용 기록 횟수를 그래프로 보면 ‘지용’ 비

<표 14> 任用, 但用, 只用, 用の 내용 계급, 품목별 분류

	진골	진골녀	6두품	6두품녀	5두품	5두품녀	4두품	4두품녀	평인	평인녀
任用	말, 리									
但用						리				
只用			표의, 고, 내의, 요, 대, 말, 리	표의	표의, 고, 내의, 반비, 요대, 말, 화대	표의, 내의	복두, 표의, 고, 내의, 반비, 요대, 화대	표의, 고, 단의, 내의, 표상, 반비, 배당, 표, 대, 요, 말, 말요	복두, 표의, 고, 내의, 요대, 화대	표의, 내의, 대, 반
用			복두, 화대	관모	복두, 리	표, 소, 채	리	반, 리, 소	리	고, 표상, 말, 말요, 소, 채

울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의류품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계급에서는 4두품 남녀 모두에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4두품 여성의 집중도는 현저히 높아 주목된다.

3. 腰帶, 褙襟에 대한 논의

1) 腰帶에 대한 것

腰帶는 ‘허리띠’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모든 관련 저서 중의 복식제도 표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것을 ‘요대’라는 용어로 일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문을 살펴보면, 남성의 것에 대해서는 眞骨大等은 腰帶禁研文白玉이, 六頭品은 帶只用烏犀鍬鐵銅이, 五頭品은 腰帶只用鐵이, 四頭品은 腰帶只用鐵銅이, 平人은 帶只用銅鐵로 기록되어 있고, 여성의 것에 대해서는 眞骨女는 기록이 없고, 六頭品女는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로, 五頭品女는 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로, 四頭品女는 帶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가, 平人女는 帶只用綾絹已下로 기록하고 있어 남성의 것은 ‘腰帶나 帶’로, 여성은 ‘帶’로 지칭되고 있고, 그 소재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것은 허리에 두르는 ‘鈔帶’로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6두품, 평인의 것에 ‘帶’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과대로서 ‘요대’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여성의 布帛帶는 용강동 고분 여성 토용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슴 부위에 정도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남성의 것처럼 ‘요대’로 칭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가 사용했던 띠의 소재와 기능의 차이가 있고 원문 기록에 준하여 보았을 때, 그 용어를 남성은 ‘요대’, 여성은 ‘대’로 분리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褙襟에 대한 것

褙襟에 대해 현재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저서에서는 모든 여성의 계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褙襟’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 즉 4두품녀의

것에 대해서는 <표 15>와 같이 “褙襟用越羅”, 평인녀는 <표 16>과 같이 “褙襟用綾”로 정리하고 있다. 이외 저서 D에서 “褙與越同 褙用越羅”라고 되어 있는 것은 ‘越’이 ‘裳’의 오기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문에는 六頭品女는 褙襟禁闕繡, 五頭品女는 褙襟禁闕繡錦羅, 四頭品女는 表裳只用純絹已下, 褙與裳同, 襟用越羅로, 平人女는 表裳用絹已下, 襟只用綾已下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6두품, 5두품 여성의 褙襟은 각각 “闕, 繡를禁한다”, “闕, 繡, 錦, 羅를禁한다”고 되어 있고, 4두품 여성의 표상은 “純, 絹 이하만 사용할 수 있는데, 褙와裳은 동일하고, 襟은越羅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평인녀의 표상은 絹 이하를 사용할 수 있는데, 襟은綾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6두품과 5두품 여성의 ‘요반’과 달리, 4두품 여성의 ‘표상’과 ‘요’의 소재가 같고, ‘반’의 소재는 ‘요’와 다르며, 평인 여성은 ‘표상’과 ‘반’의 소재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저서에서 언급한 대로 이를 ‘요반’이라는 용어로 일괄 표기하기보다는 褙와 襟은 별개의 품목으로 보고 분리하여 표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979년 김동욱의 『증보 한국복식사연구』를 필두로,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여성의 ‘요대’를 ‘대’로, ‘요반’을 ‘요’, ‘반’의 두 개의 품목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는데, 다만 ‘요’, ‘반’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¹⁸⁾

또한 4두품 여성의 ‘요’의 소재는 ‘시, 견’을, ‘반’의 소재는 ‘월라’를 사용하고, 평인 여성의 ‘반’ 소재는 ‘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평인 여성의 ‘요’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요’보다는 ‘반’에 보다 고급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의 장식적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 원전과의 비교·분석과 논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홍덕왕 복식제도를 표로 정리한 것은 아래와 같다.

<표 15> 4두품녀 요/반에 대한 원저와 저서 내용 비교

신분	품목	원저 내용	저서	저서 내용
4두품녀	褸/襟	(褸與裳同) 襟用越羅	A, B, C, F, G, H, I, J, K	褸襟用 越羅
			D	褸與越同 褸用 越羅

<표 16> 평인녀 요/반에 대한 원저와 저서 내용 비교

신분	품목	원저 내용	저서	저서 내용
평인녀	褸/襟	襟只用綾已下	A, B, C, G, H, I, J, K	褸襟用 綾
			D	褸 只用 已下

계급 복식	진골대동 (眞骨大等)	진골녀 (眞骨女)	6두품 (六頭品)	6두품녀 (六頭品女)	5두품 (五頭品)	5두품녀 (五頭品女)	4두품 (四頭品)	4두품녀 (四頭品女)	평인 (平人)	평인녀 (平人女)
표의 (表衣)	금 계수금라 禁 關繡錦羅	금 계수금라 禁 關繡錦羅	지용 면주주포 只用 綿軸軸布	지용 중소문등시견 只用 中小文綾純絹	지용 포 只用 布	지용 무문독직 只用 無文獨職	지용 포 只用 布	지용 면주 이하 只用 綿軸 已下	지용 포 只用 布	지용 면주포 只用 綿軸布
고 (袴)	동 표의 同 表衣	동 내의 同 內衣	지용 시견면주포 只用 純絹綿軸布	금 계수금라 세라금니 禁 關繡錦羅 總羅金泥	지용 면주포 只用 綿軸布	금 계수금라세라야 초라금니 禁 關繡錦羅總羅 野草羅金泥	동 표의 同 表衣	지용 소문등시견 이하 只用 小文綾純絹 已下	동 표의 同 表衣	용 시 이하 用 純 已下
단의 (短衣)	○	○	○	동 배당 同 襟褸	○	금 계수금야초라포 방라세라 금은니힐힐 禁 關繡錦野草羅布 紡羅總羅 金銀泥纈縵	○	지용 견 이하 只用 絹 已下	○	○
내상 (內裳)	○	○	○	금 계수금라 야초라 禁 關繡錦羅 野草羅	○	금 계수금야초라금 은니힐힐 禁 關繡錦野草羅 金銀泥纈縵	○	무 내상 無 內裳	○	○
표상 (表裳)	○	○	○	금 계수금라 세라야초라 금은니힐힐 禁 關繡錦羅總羅 野草羅金銀泥纈縵	○	금 계수금 야초라세라 금은니힐힐 禁 關繡錦 野草羅總羅 金銀泥纈縵	○	지용 시견 이하 (褸와裳같다) 只用 純絹 已下 (褸與裳同)	○	용 견 이하 用 絹 已下
내의 (內衣)	○	금 계수금라 禁 關繡羅	지용 소문등시견포 只用 小文綾純絹布	금 계수금야초라 禁 關繡錦野草羅	지용 소문등시견포 只用 小文綾純絹布	지용 소문등 只用 小文綾	지용 시견면주포 只用 純絹綿軸布	지용 소문등 이하 只用 小文綾 已下	지용 견포 只用 絹布	지용 시견면주포 只用 純絹綿軸布
반비 (半臂)	동 표의 同 表衣	동 내의 同 內衣	○	금 계수금라 세라 禁 關繡錦羅總羅	동 내의 同 內衣	금 계수금 야초라세라 禁 關繡錦 野草羅 總羅	동 내의 同 內衣	동 고 同 袴	○	○
배당 (襟褸)	○	○	○	금 계수금라 포방라야초라 금은니 禁 關繡錦羅 布紡羅野草羅 金銀泥	○	금 계수금야초라포 방라금은니 힐힐 禁 關繡錦野草羅布 紡羅金銀泥 纈縵	○	지용 능 이하 只用 綾 已下	○	○
표 (袂)	○	금 계수금수 용 금은사 공작미 비취모자 禁 關及繡 用 金銀絲孔雀尾 翡翠毛者	○	금 계수금라 금은니 禁 關繡錦羅 金銀泥	○	용 능견 이하 用 綾絹 已下	○	동 단의 同 短衣	○	○
요대 (腰帶)	금 연문백옥 禁 硯文白玉	○	(帶) 지용 오서유철동 只用 烏犀輪鐵銅	○	지용 철 只用 鐵	○	지용 철동 只用 鐵銅	○	(帶) 지용 동철 只用 銅鐵	○
대 (帶)	○	○	○	금 이금은사 공작미비취모위 조 禁 以金銀絲 孔雀尾 翡翠毛爲組	○	금 이금은사 공작미비취모위 조 禁 以金銀絲 孔雀尾 翡翠毛爲組	○	금 수조금야초라승 천라힐라 지용 금주 이하 禁 繡組及野草羅 乘天羅越羅 只用 錦軸 已下	○	지용 능견 이하 只用 綾絹 已下
요 (褸)	○	○	○	금 계수 禁 關繡	○	금 계수금라 禁 關繡錦羅	○	지용 시견 이하 (褸와裳같다) 只用 純絹 已下 (褸與裳同)	○	○

홍덕왕 복식제도 원전 고찰 및 분석

반 (襟)	○	○	○	금 계수 禁 闕繡	○	금 계수금라 禁 闕繡錦羅	○	용 월라 用 越羅	○	지용 능 이하 只用 綾 已下
말 (襪)	임용 능 이하 任用 綾 已下	동 내의 同 內衣	지용 시면주포 只用 純綿紬布	금 계수금라 세라야초라 禁 闕繡錦羅 總羅野草羅	지용 면주 只用 綿紬	금 계수금라 세라야초라 禁 闕繡錦羅 總羅野草羅	○	지용 소문릉시 면주포 只用 小文綾純 綿紬布	○	용 시면주 이하 用 純綿紬 已下
말요 (襪袖)	○	○	○	금 계라세라 禁 闕羅總羅	○	금 계수금라 세라 禁 闕繡錦羅 總羅	○	지용 소문릉 이하 只用 小文綾 已下	○	용 무문 用 無紋
화 (靴)	금 자피 禁 紫皮	○	금 오미추문자피 禁 烏糜 추문자紫皮	○	금 오경추문자피 禁 烏慶 추문자紫皮	○	금 오경추문자피 禁 烏慶 추문자紫皮	○	금 오경추문자피 禁 烏慶 추문자紫皮	○
화대 (靴帶)	금 은문백옥 禁 隱文白玉	○	용 오서유철동 用 烏犀 鑰鐵銅	○	지용 유철동 只用 鑰鐵銅	○	지용 철동 只用 鐵銅	○	지용 철동 只用 鐵銅	○
이 (履)	임용 피사마 任用 皮絲麻	동 내의 同 內衣	지용 피마 只用 皮麻	금 계수금라 세라 禁 闕繡錦羅 總羅	용 피마 用 皮麻	단용 피 이하 但用 皮 已下	용 우피마 이하 用 牛皮麻 已下	용 피 이하 用 皮 已下	용 마 이하 用 麻 已下	○
소 (梳)	○	금 슬슬전대모 禁 瑟瑟鉞玳瑁	○	금 슬슬전 瑟瑟鉞	○	용 소대모 이하 用 素玳瑁 已下	○	용 소아각목 用 素牙角木	○	용 소아각 이하 用 素牙角 已下
채 (釵)	○	금 각루금철주 禁 刻鏤及綴珠	○	금 순금이은 각루금철주 禁 純金以銀 刻鏤及綴珠	○	용 백은 이하 用 白銀 已下	○	금 각루철주금순 금 禁 刻鏤綴珠及純 金	○	용 유석 이하 用 鑰石 已下
포 (布)	용 이십육승 이하 用 二十六升 已下	용 이십팔승 이하 用 二十八升 已下	용 십팔승 이하 用 十八升 已下	용 이십오승 이하 用 二十五升 已下	용 십오승 이하 用 十五升 已下	용 이십승 이하 用 二十升 已下	용 십삼승 이하 用 十三升 已下	용 십팔승 用 十八升	용 십이승 이하 用 十二升 已下	용 십오승 이하 用 十五升 已下
색 (色)	○	구색 금 자황 九色 禁 赭黃	○	금 자황자 자분금설홍 禁 赭黃紫 紫粉金屑紅	○	금 자황자 자분황설홍미 禁 赭黃紫 紫粉黃屑紅緋	○	금 자황자 자분황설비홍 멸자 禁 赭黃紫 紫粉黃屑緋紅 滅紫	○	동 사두품녀 同 四頭品女
관모 (冠帽)	복두 임의 幘頭 任意	관 금 슬슬전 冠 禁 瑟瑟鉞	복두 용 세라시건포 幘頭 用 總羅純絹布	관 용 세라사건 冠 用 總羅紗絹	복두 용 라시건포 幘頭 用 羅純絹布	무관 無冠	복두 지용 사시건포 幘頭 只用 紗純絹布	무관 無冠	복두 지용 건포 幘頭 只用 絹布	○

4. 의복 재료의 가치 기준에 대한 논의

원전에 기록된 소재에 대한 용어 중 ‘闕繡錦羅, 闕繡錦, 闕繡羅, 闕繡, 闕羅, 闕錦, 總羅’의 표기법에 대해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闕繡錦羅, 闕繡錦, 闕繡羅, 闕繡, 闕錦’을 한 종류로 보는 견해¹⁹⁾, ‘闕繡錦羅’를 ‘계수’와 ‘금라’로 분리하여 보는 견해²⁰⁾, ‘錦羅’, ‘闕羅’를 한 종류로 보는 견해²¹⁾, ‘總羅’를 제외하여 모든 용어

를 나누어 ‘계’, ‘수’, ‘금’, ‘라’로 분리하여 보는 견해²²⁾, ‘總羅’를 ‘세’, ‘라’로 분리하는 견해²³⁾, 전술한 연구 내용처럼 용어를 세분하지 않고 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²⁴⁾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용어를 분리하여 보는 견해에 동의²⁵⁾하고, 원전에 기록된 품목을 기준으로 계급과 성별에 따라 당시 소재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치 분류 대상 소재는 闕, 繡, 錦, 羅 계통의 羅/總羅/野草羅/布紡羅/乘天羅/越羅, 紗, 綾

<표 17> 품목별 소재의 가치 비교(진한 색상 칸은 '사용금지')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평인	
관모	남		세라/시/견/포	라/시/견/포	견/포	
	녀		세라/사/견			
세라→라→사→시→견/포						
표의	남	계/수/금/라	면주/주/포	포	포	
	녀	계/수/금/라	중소문룡/시/견	무문독직	면주	면주/포
계/수/금/라→중소문룡/시/견→무문독직→주→면주→포						
고	남	계/수/금/라	시/견/면주/포	면주/포	포	
	녀	계/수/라	계/수/금/라/세라	계/수/금/라/세라/야초라	소문룡/시/견	시
계/수/라→금/세라→야초라→소문룡→견→시→면주→포						
단의	남					
	녀		계/수/금/라/포방라/야초라	계/수/금/야초라/포방라/세라	견	
라→계/수/금/야초라/포방라→세라→견						
내상	남					
	녀		계/수/금/라/야초라	계/수/금/야초라		
라→계/수/금/야초라						
표상	남					
	녀		계/수/금/라/세라/야초라	계/수/금/야초라/세라	시/견	견
라→계/수/금/야초라/세라→시→견						
내의	남		소문룡/시/견/포	소문룡/시/견/포	시/견/면주/포	견/포
	녀	계/수/라	계/수/금/야초라	소문룡	소문룡	시/견/면주/포
라→계/수→금/야초라→소문룡→시→견→면주→포(※)						
반비	남	계/수/금/라		소문룡/시/견/포	시/견/면주/포	
	녀	계/수/라	계/수/라/세라	계/수/금/야초라/세라	소문룡/시/견	
계/수/라→세라→금/야초라→소문룡→시/견→포→면주(※)						
배당	남					
	녀		계/수/금/라/포방라/야초라	계/수/금/야초라/포방라	룡	
라→계/수/금/야초라/포방라→룡						
표	남					
	녀	계/수	계/수/금/라	룡/견	견	
계/수→금/라→룡→견						
대	남					
	녀		금은사, 공작미, 비취모 끈	금은사, 공작미, 비취모 끈	繡組/야초라/승천라/월라 금/주	룡/견
금은사, 공작미, 비취모 끈→繡組/야초라/승천라/월라→금/주→룡/견						
요	남					
	녀		계/수	계/수/금/라	시/견	
계/수→금/라→시/견						
반	남					
	녀		계/수	계/수/금/라	월라	룡
계/수→금/라→월라→룡						
말	남	룡	시/면주/포	면주		
	녀	계/수/라	계/수/금/라/세라/야초라	계/수/금/라/세라/야초라	소문룡/시/면주/포	시/면주
계/수/라→금/세라/야초라→룡/소문룡→시→포→면주(※)						
말요	남					
	녀		계/라/세라	계/수/금/라/세라	소문룡	무문
계/라/세라→수/금→소문룡→무문						
리	남					
	녀	계/수/라	계/수/금/라/세라			
계/수/라→금/세라						

계통의 綾/中·小文綾, 無文獨職, 평견직물 계통의 緇/絹/紬/綿紬, 布이다.

원전 기록에 따르면, 사용금지 소재는 '罽, 繡, 錦, 羅 계통'이고, 사용가능 소재는 '紗, 綾 계통, 無文獨職, 평견 직물, 布'로 구분되는데, 모든 품목에 걸쳐 전자가 후자에 비해 상등이므로, 전자와 후자는 각각 가치 순으로 배열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다만 관모의 경우, 6두품 남녀, 5두품 남성의 소재로 '라, 세라'를 허용한 것과 4두품녀의 반의 소재로 '율라'를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소재에 대해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罽, 繡, 羅 → 錦²⁶⁾, (紬) → 總羅 → 野草羅, 布紡羅, 乘天羅 → 越羅 → 中·小文綾, 小文綾 → (紬) → 綾 → 紗 → 緇, 絹 → 綿紬 → 布'의 순으로 정리된다.²⁷⁾

이때 '紬'는 당시 '무문릉'에 앞서면서 정덕본 원문 기록에 따르면, 4두품 여성의 '대'의 소재로 錦과 함께 사용될 정도로 고급 견직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²⁸⁾이다. 또한 정덕본, 주자본 원문 기록에 따르면, 이는 6두품 표의 소재로 綿紬와 동시에 기록²⁹⁾됨으로써 이들은 서로 별개의 의료였음을 알 수 있고, 6두품의 表衣, 4두품녀 帶, 2건에만 기록되어 있는 주와 달리 면주는 6두품 이하의 계급과 의복 품목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보다 일상의료로서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율라'는 '세라, 야초라, 포방라, 승천라'와 달리 4두품녀의 소재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소재에 비해 가치가 다소 낮은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면주'가 '포'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내의, 반비, 말'에서 보듯이 '포'가 '면주'보다 상등으로 짐작되는 예(<표 17>에 ※로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는 '포'가 계층에 따라 升數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포의 승수가 다소 높을 때 면주보다 높은 가치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삼국사기』 원전 중 현전하는 정덕본과 주자본에 수록된 원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복식 관련 저서에 수록되어 있는 홍덕왕 복식제도에 관한 표 및 서술에 대한 오기와 일부 의복 품목의 표기 방식에 대해서 재고하고, 복식 제도에 등장하는 일부 의복 재료의 가치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홍덕왕 복식제도에 대한 삼국사기 원전기록을 한국복식문화 관련 저서에 정리된 내용과 비교한 결과, 『朝鮮服飾考』(1948), 『韓國服飾史』(1971)에서 비롯한 오기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이후 다른 오기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였다.

오기의 형태는 20여종의 복식과 관련해 계급별로 소재에 관한 오기가 가장 빈번히 나타났고, 원전에는 없는 4두품 표상에 관한 내용의 제시로 남자의 裳 착용 예를 제공하고 있는 점, 원전 기록에는 있으나 내용 자체가 누락되어 특정 품목의 사용 여부에 대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지적되었으며, 동일 품목도 저서에 따라 여러 형태로 오기가 나타나거나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 저서에서 한자의 한글 讀音이 잘못된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외 기록이 없는 부분을 '제한없음'으로 정리한 경우는 계급별, 성별에 따라 사용 여부에 대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저서와 동일하게 공란이나 기록없음, 혹은 ○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덕본과 주자본의 내용이 相異했음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4두품녀대의 소재를 '면주'로 기록한 것은 대부분의 저서가 주자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정리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평인녀의 대와 관련하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정덕본에 수록된 '금, 주'로 보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었다.

2. '요대'에 대한 남녀 일괄 표기와 '요반'의 표

기에 대해 재고하였다.

원전의 내용 분석 결과, 요대와 대는 서로 소재와 기능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주로 금속제 소재인 남자의 요대는 허리에 두르는 용도의 것이나 여자의 대는 포백제로써 용강동 구분 출토 여성상을 통해 그 위치도 가슴 부위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요대'는 남자의 복식품목으로, '대'는 여자의 복식품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요반'은 일찍이 선행연구에서도 별개의 품목으로 제안 했던 바 있으나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저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원전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이는 하나의 품목이 아니라 '요', '반'이라는 별개의 품목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작성된 흥덕왕의 복식 제도에 관한 표를 제시하였다.

3. 제시되고 있는 소재들에 대한 가치 분석결과 당시는 '주'가 상당한 가치를 지닌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상 하등 소재이자 '면주'보다 낮은 가치로 생각되었던 '布'는 일부 품목에서 '면주'보다 상등으로 짐작되는 예가 나타나는데, 이는 '포'가 계층에 따라 升數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승수가 높은 포는 면주보다 높은 가치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신라 복식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흥덕왕 복식제도에 대해 원전에 근거하여 수정 제안한 내용과 선행연구에서 일부 언급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되짚어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이 이후의 출간 저서에서는 재고되기를 기대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4두품녀 帶의 소재에 대해, 조선 중종대의 정덕본과 중종 이후에 간행된 주자본의 원전 내용이 서로 달라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덕본 내용에 보다 신빙성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4두품 남자의 只用 품목이 다른 계급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이강래 (2007), *三國史記 形成論*, 서울: 신서원, p. 17, p. 223.
신형식 (2011), *삼국사기의 종합적 연구-한국고대사의 심층적 분석*, 서울: 경인문화사, p. 4.
- 2) 『구삼국사』, 『고기』는 『삼국사기』의 중심 전거 자료이다. ① 『구삼국사』: 이규보는 그의 『東明王篇』서문에서 『구삼국사』의 존재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삼국사기』에 선행하는 삼국 관련 역사 자료이다. 즉 '중찬'된 『삼국사기』는 이른바 '신삼국사'이며, 그에 대응하는 미지의 자료가 '구삼국사'이다. '구삼국사' 자체가 특정 사서의 고유 서명은 아니고, 편이상 하나의 서명처럼 부르는 것으로,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前三國史', '三國史' 또는 『大覺國師文集』에 나타나는 '海東三國史'도 이에 해당된다.
② 『고기』: 『삼국사기』를 올리면서 밝힌 기존 삼국 관련 역사 기록물에 대한 총칭으로서의 『고기』는 그 수사 재료로서의 위상에서 이규보가 지적한 『구삼국사』와 대응하는 위치에 있다. 『고기』는 『古記』 『海東古記』 『三韓古記』 『本國古記』 『新羅古記』 등의 형태로 『삼국사기』 24군데에서 인용되었다.
- 이강래, *Ibid.*, pp. 159-163, pp. 177-178.
강경구 (1997), *三國史記 原典研究: 借字表記體系的 檢討*, 서울: 학연문화사, pp. 17-18.
- 3) 정덕본에 기초하여 출판된 영인본, 교감본,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김부식 (1931), *三國史記*, 京城: 古典刊行會.
靑柳綱太郎 편 (1975), *原文 和譯 對照 三國史記 下*, 東京: 名著出版.(朝鮮硏究會로부터 간행된 것을 원본으로 復刻)
김정배 교감 (1982), *校勘 三國史記* (수정 3판),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조병순 (1984), *增修補註 三國史記*, 서울: 誠庵古書博物館.
김부식 저, 이강래 교감 (1998), *원본 삼국사기*, 서울: 한길사.
- 4) 김부식 (1997), *삼국사기 3*, 이재호 역, 서울: 솔, pp. 15-16.
- 5) 주자본에 기초하여 출판된 영인본,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편 (1986), *三國史記(鑄字本)*, 東京: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정구복 외 (1997), *譯註 三國史記 2-번역판*,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부식 (1997), *삼국사기 1*, 이재호 역, 서울: 솔.
김부식 (1998), *삼국사기 II*, 이강래 역, 서울: 한길사.
- 6) 이여성 (1947), *朝鮮服飾考*, 京城: 白楊堂, pp. 108-109.
- 7) 김동욱 (1979 a), 신라통일기 이후의 복식-흥덕왕 복식 금제와 관련하여-, *증보 韓國服飾史硏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김동욱 (1979 b), 흥덕왕 복식 금제의 연구-신라말기 복식 再構를 중심으로-, *증보 韓國服飾史硏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김동욱 (1982), 신라통일기의 복식, *한국의 복식*, 서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희정 (1995), *裳과 裙에 관한 연구-統一新羅時代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구 (1997), 三國史記의 服飾用語 研究 (I), *복식문화연구*, 5(1).
 구인숙 (1998), 경주 황성동고분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미, *복식*, 13.
 김진구 (1998),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III-色服의 織物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전혜숙 (1998), 신라통일기 정치적 상황과 복식연구-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복식실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김진구 (1999),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VI-色服의 服飾附屬品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3).
 고부자 (2000), 경주 용강동출토 토용복식고, *고고역사학지*, 16.
 권준희 (2001), *신라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준희, 조우현 (2002), 統一新羅 內衣, 短衣 考, *복식*, 52(2).
 권준희, 조우현, 남윤자 (2002), 統一新羅의 치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3/4).
 김정진 (2008), 경주 용강동 고분 출토 토용의 복식사적 의미, *한복문화*, 11(1).
 박남수 (2011.12), 신라의 衣生活와 織物 생산, *한국고대사연구*, 64.
- 8) 이여성 (1947), *朝鮮服飾考*, 京城: 白楊堂, pp. 108-109.
 - 석주선 (1971),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pp. 28-29.
 -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77-78.
 - 김동욱 (1979 a), *op. cit.*, pp. 19-32.
 - 김동욱 (1979 b), *op. cit.*, pp. 87-127.
 - 김동욱 (1982), 신라통일기의 복식, *한국의 복식*,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 69-82.
 - 임명미 (1996), *한국의 복식문화(1)*, 서울: 경춘사, pp. 217-220.(여자 복식에 대해서만 정리됨)
 - 유송욱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pp. 78-79.
 -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pp. 49-50.
 -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80-81.
 - 황의숙 외 (2010), *아름다운 한국복식*, 서울: 수학사, pp. 55-56.
 - 김정호 (2012), *우리옷 역사-2000년*, 대전: 글누리, pp. 73-74.
 - 9) 諸橋轍次 (1984), *大漢和辭典 권10* (수정판), 東京: 大修館書店, p. 242.
 - 10) 김희정은 4두품 남자의 표상에 “용 시견”이라 하여 상을 허용하는 사향이 있음을 바탕으로, 특별히 곱품 중 가장 아래 두품인 4두품에게 허용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 위의 두품은 당연히 착용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민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의복으로 보았다.(김희정, *op. cit.*, p. 88.)
 - 11) ‘越羅’의 한글음을 ‘활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활’은 부들자리의 뜻으로, ‘활라’는 격자무늬와 유사한 부들자리 무늬가 있는 얇은 비단을 의미한다고 했다.
 - 정구복 외, *op. cit.*, p. 122.
 - 12) 김동욱 (1979 a), *op. cit.*, pp. 19-32.
 김동욱 (1979 b), *op. cit.*, pp. 87-127.
 김동욱 (1982), *op. cit.*, pp. 69-82.
 - 13) 『三國史記』卷第33 雜誌 第2 色服 : 平人女…帶只用綾絹已下
 - 14) 정구복 등은 본 연구자의 견해와 달리하는데, 종종 입신본(정덕본)에는 ‘錦’으로 되어 있으나 주자본과 이병도 校勘本에는 이를 ‘縹’으로 보았으므로 그에 따라 원문을 교감하였다. 또한 가장 정교하고 화려한 비단인 錦은 4두품 여자가 썼다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보았다.
 - 정구복 외, *op. cit.*, p. 122.
 - 15) 김진구 (1999), *op. cit.*, p. 343.
 - 16) 諸橋轍次 (1984), *大漢和辭典 권1* (수정판), 東京: 大修館書店, p. 685.
 민중서림편집국 (1998), *漢韓大字典* (제2판), 서울: 민중서림, p. 168.
 - 17) 諸橋轍次 (1984), *大漢和辭典 권2* (수정판), 東京: 大修館書店, p. 750.
 - 18) 일부 저서와 선행 연구에서 ‘요’와 ‘반’을 분리하여 언급한 예는 다음과 같다.
 - 김동욱은 褌는 치마를 묶는 허리띠, 襟은 일종의 옷고름으로 보고 있다.(김동욱 (1979 a), *op. cit.*, p. 24. ; 김동욱 (1979 b), *op. cit.*, p. 90. ; 김동욱 (1982), *op. cit.*, pp. 75-76.)
 - 김희정은 사진적 의미에 의거하여 대체로 요는 치마허리나 치마끈으로, 반은 옷고름이나 어깨끈으로 보고 있다.(김희정, *op. cit.*, pp. 111-112.)
 - 김진구는 요는 치마말기, 즉 치마허리로, 반은 치마허리끈으로 보고 있다.(김진구 (1997), *op. cit.*, p. 4.)
 - 고부자는 요, 반은 서로 달리 이용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고 표의에 장식하는 넓은 대로 생각했다. 이때 대에는 장식적인 紐가 보이므로 일단 치마 아래로 내려진 두 줄의 끈이라고 하였다.(고부자, *op. cit.*, p. 453.)
 - 권준희는 요는 단의, 배당을 여미는 일종의 옷고름으로, 반은 표상의 허리에서 늘어진 긴 끈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상 착용시 어깨끈이 부착되어 있던 점으로 미루어 반은 상의 어깨끈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권준희, *op. cit.*, pp. 181-182.)
 - 권준희, 조우현, 남윤자는 요는 치마말기 혹은 어깨끈의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하였고, 반은 치마의 여밈을 위한 장식끈으로 보았다.(권준희, 조우현, 남윤자, *op. cit.*, pp. 170-171.)
 - 박남수는 요는 치마허리끈으로, 반은 잠정적으로 옷끈이라 하였다. 그러나 신라시대에 옷고름 사용 여부는 분명하지 않음을 덧붙여 밝혔다.(박남수, *op. cit.*, p. 452.)
 - 전술한 선행연구 외에 최근 김문자는 2013년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복 범위를 고유복식까지 확대하였는데, 요는 허리말기, 반은 늘여지는 끈,

- 대는 직령의 유, 표의를 여미는 수단으로 보았다.
- 19) 구인숙, *op. cit.*, p. 35. : 박남수 (2011.12), *Ibid.*, p. 463, p. 465, p. 467, pp. 469-470.
특히 박남수는 '계수금라, 계수라, 계수금'을 '계수'에 속하는 같은 계통의 직물로 보고 있다.
 - 20) 김정진, *op. cit.*, p. 17.
 - 21) 조효숙 (2006), *옷감과 바느질,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p. 76.
 - 22) 김진구 (1998), *op. cit.*, p. 179. : 김진구 (1999), *op. cit.*, p. 344, pp. 354-355. : 권준희, 조우현, *op. cit.*, p. 106. : 전현실, 강순제 (2011), 고대 한일 관계에서 본 평직 견직물 紬, 緇에 관한 연구, *복식, 61(4)*, p. 120.
 - 23) 김정진, *op. cit.*, p. 19.
 - 24) 전혜숙, *op. cit.*, pp. 188-189, pp. 192-195.
 - 25) 진골녀 袂에 대해 원전에는 “禁闕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하여 闕와 繡는 독립된 직물임을 알 수 있고(김진구 (1998), *op. cit.*, p. 176.), 이중직의 두터운 錦과 의조직의 얇은 羅는 별개의 직물로, 오랫동안 상류층의 대표적인 의복 재료로 사용되었다.
 - 26) 김진구는 신라 직물 등급에서 錦은 羅보다 한 등급 높기 때문에 신라 직물 귀중도의 순서로 볼 때 항상 '계, 수, 금, 라'로 써야 할 것이며, “禁 闕繡羅”로 기록된 경우는 '錦'字가 '羅'字 앞에서 누락되었거나 전사시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김진구 (1999), *op. cit.*, p. 344, p. 355.)
 - 27) 이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 내용에서, 김진구는 '계, 수, 금, 라, 룡, 사, 시, 견, 면주, 포'의 순으로(김진구 (1998), *op. cit.*, p. 185.), 박남수는 '계수(계수라-계수금라-계수금)-라(포방라-세라-야초라-승천라-월라-라)-[금은니-힐]-룡(중소문룡-소문룡-룡)-시-[사?]-견-면주-주'의 순으로 가치를 정리했다.(박남수, *op. cit.*, p. 469.)
 - 28) 전현실, 강순제, *op. cit.*, pp. 119-120.
 - 29) 『三國史記』卷第33 雜志 第2 色服 : 六頭品…表衣只用綿紬紬布
 - 30) 전현실, 강순제, *op. cit.*, p. 119.